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형집행법 추가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2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형집행법 추가	3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갇혀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형집행법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호고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 ----- ----- ----- -----

가. ~ 허. (생략) <u><신설></u> <u>고.</u> (생략) 2. ~ 7. (생략)	----- -----. 가. ~ 허. (현행과 같음) <u>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u> <u>처우에 관한 법률」</u> <u>노.</u> (현행 고목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을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등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 제2조제1호1)에서는 보호·선도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²⁾에서도 교정복지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같은 호 처목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갇혀보호사업 역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형집행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①인성교육, ②검정고시, 전문대학, 독학사 등 학력 취득 교육, ③직업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 **교정복지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등

훈련 및 취·창업지원, ④심리치료 및 중독치료 프로그램, ⑤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법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될 경우, 교정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관련 업무경력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³⁾받을 수 있게 되므로, 퇴직 후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는 교정행정 분야에 사회복지 전공자 등의 진입을 유인하여 교정복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정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현황 >

(단위: 명, 2025.11.17. 기준)

구분	정원	현원	사회복지학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교정공무원	16,762	16,734	323	1,082
소망교도소 직원	130	123	8	28

* 사회복지사 1·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포함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1]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별표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다만, 교정시설은 법무부 소관 하에 형벌 집행과 수형자 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전달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원화된 관리 구조는 정책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설령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더라도 종사자의 결격사유, 시설의 안전점검 및 평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여러 규정들이 제도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 제2조제1호 고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보고 있으므로, 법률에 비해 탄력적인 규율이 가능한 시행령에 형집행법을 추가하여 법률 개정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처우와 권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영역은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있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무부) 출소 이후 주거·생계·의료·취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에 대하여 지자체 등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선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확보하여 재범 위험 감소 및 인권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정공무원이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성 및 직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기반 인사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정 및 보호관찰 시설 내 복지사업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입법 취지에 찬성함.

다만, 최근 사회적 복지 수요의 가변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법률의 직접 개정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해당 근거 법령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동의하며, 향후 교
화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공제사업 개발에 협력하겠음.

문 의 처
02)6788-5497